한 유명 배우의 인격에 가해진 '알 권리'라는 이름의 폭력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 배우의 죽음

얼마 전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된 죽음이 아닐까?'라는 절망과 참담함을 안겼다. 고(故) 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1] 이라는 기사가 먼저 떴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큰 표차로 패한 날로부터 1주일 뒤로, 그 선거 결과로 인하여 정부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었다.[2] 그로부터 또 수일 뒤에 유명 가수인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인천경찰청발 보도[3]가 이어졌다.[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조치들을 취해가는 와중에, 연속적으로 유명인들에 대한 마약 혐의가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

1) 백성진·김샛별 (2023. 10. 19).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경기신문〉. URL: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7181

2) 박수찬 (2023. 10. 12). 민심의 경고..與, 강서구청장 선거 17%p 차로 완패.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0/12/2WU6V7QY35D5PNZZYQBVFICLHM/

3) 고(故) 이선균 씨 수사를 진행한 곳도 인천경찰청이었다.

4) 홍현기 (2023. 10. 25).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 파장 확산(종합 2보).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5147351065 지드래곤에 대한 검사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지지 않자, 2023년 1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실은 이선균 씨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선균 씨는 협박을 받고 3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갈취당한 뒤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였다. 최초의 언론 보도는 위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지점만을 주목했다. 2023년 10월 28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선균 씨는 '가족에 미안하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런데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검사와 모발 및 겨드랑이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 2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선균 씨 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안은 진실게임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려고 애썼다. 2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온 직후인 2023년 11월 24일 〈KBS〉는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선균 씨의 실제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5] 〈KBS〉는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보도했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 사적 대화를 부각해 추가 보도했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이선균 씨를 공개 소환했는데, 2023년 12월 23일 세 번째 공개 소환 때는 이선균 씨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6]

2023년 12월 26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KBS〉가 일부만 발췌 보도한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통화 녹음 내용 전체를 당사자들의 음성 그대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2023년 12월 27일 오전 이선균 씨는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BS〉는 2024년 1월 12일 메인뉴스 '문화인들 "이선균 수사 적법했나?"...언론 자성도 촉구' 리포트에서 'KBS의 해당 음성 녹음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7]

누가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나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언론은 어떻게 경찰의 이선균에 대한 내사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공갈'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소장을 낼 때 이선균 본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렸을 리 만무하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의심한 경찰이 이선균 씨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KBS〉나 〈가로세로연구소〉는 고(故) 이

5) 윤아림 (2023. 11. 24). [단독]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 진술...이선균 측 "허위 주장". 〈KBS 9시 뉴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CXOWUe1r-ik

6) 김성훈 (2023. 12. 28). 3번이나 카메라 앞 사과한 이선균...규칙 깨고 비공개 요청 거부한 경찰. 〈헤럴드경제〉. URL: https://naver.is/n/?news=016_0002244661

7) 정철운 (2024. 1. 13). KBS "유흥업소 실장 통화 보도, 이선균 사망과 연결은 무리".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42

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사이의 사적 대화가 포함된 녹음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KBS〉와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했을까.

수사기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의 '명분'으로 활용한다. 형법 제126조[8]가 엄연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이미 사문화된 형법 조항으로부터 위하력을 느끼지 않는다.[9] 때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정보가 정치권의 '국면전환용'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명인의 곤궁한 상황이 때로 여론의 흐름을 뒤바꾸고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수사기관과 그 지휘권자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불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하여 실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 형법 제126조를 개정해서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의 통제방안(피의사실공표 금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며,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11] 이러한 무성한 논의 와중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의 의혹 대상인 경찰은 오히려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8)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9)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10)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2024. 1. 30).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자료집.

11) 백민 (2024. 1. 30). 고(故) 이선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 방향. 위 입법토론회 자료집, pp.1–31.

부실 수사를 비판한 언론사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했다. 디스패치는 경찰이 2023년 10월 18일(최초 보도 하루 전날)에 작성한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진행 보고서'를 인용·지적하여 부실수사를 비판했는데, 위 보고서의 유출 경위를 확인한다는 게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의 이유였다.[12] 경찰이 자신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언론을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과연 책임 있게 이 사건에 관한 스스로의 죄책을 물으려고 할까.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 vs. 범죄 피해와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

이번 일과 관련한 많은 언론 보도들은 모두 시민들의 '알 권리' 또는 '알고 싶은 욕구'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그에 조응하는 언론 보도는 어느 범위까지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일반인에 대한 경우보다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알 권리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고(故) 이선균 씨와 같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역시 '공적 인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판단하면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아래 표의 판결요지에서처럼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13]

> 원고 A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볼 것인데,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공적 인물의 활동이나 그 평가와 무관한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일부 사람의 호기심 위주의 관심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법원은 특히 공적 인물의 사생활 중에서도 성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요지처럼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4]

---

12) 이재진 (2024. 1. 23). '고(故) 이선균 사건 경찰·언론 비판' 디스패치 압수수색.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6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2가합4911 판결.

국민들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일반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바,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서 침해되는 영역이 외계 내지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침해이익의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그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떨까. 개별 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정황과 조건에 따라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겠지만, 공적 인물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정당한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번 〈KBS〉의 보도에서 문제된 부분은 고(故)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었다. 위 보도가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직접 표현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 보도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故) 이선균 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있고, 위 보도 내용을 가족들이 접한다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되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예상 가능하다. 또한 보도의 대상이 된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관계'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와 법률적, 구성요건적으로 불가결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고(故) 이선균 씨는 공갈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은 범죄 가해자의 입장에 놓인 공적 인물의 사생활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언론이나 대중이 이 사건에서 고(故) 이선균 씨를 강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들에게는 고(故) 이선균 씨가 피해자로서 당한 공갈 범죄는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일까. 그 인식과 더불어 '불륜'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에 대한 호기심만이 크게 발동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선균 씨가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라는 인식은 언론이 만든 오해에서 비롯한 편견일 수 있고, 그 깨질 것 같지 않은 대중의 편견이 피해자인 이선균 씨를 더욱 절망하게 했을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어린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원인을 보도하면서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게임에 몰두한 사정이 성폭력 범죄에 일정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건에서, 아래 요지에서처럼 범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도할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15]

>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원인 또는 경위와는 무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보도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공개 금지는 현행법[16]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

배우가 호소한 초상권 그리고 동의 없이 침해된 음성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초상, 음성, 성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은 각각 별개의 인격적 가치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판결.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말한다.

한다.[17]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선균 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전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방송 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는 건데,[18] 오히려 경찰청 훈령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석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이 이선균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방치하거나 또는 언론에 조력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98호]

제16조(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경찰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위 수사과정이 촬영·녹화·중계방송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故) 이선균 씨를 특히 그의 목소리 때문에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다. 오랫동안 영화 속 그의 목소리를 따라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관객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의 목소리를 함부로 들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 법원도 '음성권'에 관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했다.[19] 음성의 동의 없는 음성의 배포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텐데, 〈KBS〉가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사이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을 발췌한 뒤 실제 음성을 내보낸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방송에서 이선균 씨의 실제 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의 이미지와 음성을 이용해 도리어 그를 공격한 것으로서 매우 악의적이었다. 그런데도 〈KBS〉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녹취 파일 전체를 이선균 씨의 음성 그대로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다. 바로 다음날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욱 가슴이 아픈 일이다. 유족들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7) 문건영 (2020. 10. 28).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9권 제5호(통권 제743호), p.211.
18) 김성훈, 위의 글 참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그의 죽음과 맞바꾼 알 권리

고(故) 이선균 씨는 유명 배우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과도한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 대다수 언론에게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대중의 관심과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경제적 생존 전략이 되었고, 때로 대중은 그 치열한 클릭 전쟁의 포로가 된다. 그 사이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개인의 인격적 가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 이선균 배우. 그는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알 권리로써 만족을 얻었는가.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인가.